

차량운행 관리정보의 부정취득 및 부정사용에 대한 영업행위 금지 청구 사건

08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지방법원	사건번호	평성11년(와) 제19224호
판결 일자	2000. 12. 7.	판결 결과	원고 전부패소
원고	주식회사 세논		
피고	주식회사 코어즈 오토 서비스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영업 비밀	계약내용 일람표, 관리차량의	운행자 일람표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부정취	득	

02 사건 개요

원고는 경비, 빌딩 메인티넌스, 차량운행 관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의 도쿄 죠사이(城西)지사는 차량운행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지사이다.

피고는 스쿨버스 등의 운행관리, 보수, 수리, 보관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8. 10.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의 대표이사 사장이었던 B가 1998. 7. 원고를 퇴사하여 피고의 대표자에 취임했고, 원고의 죠사이(城西)지사 운행관리부 과장 등으로서 근무하였던 C가 1999. 1. 원고를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B, C로부터 원고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해 영업행위의 금지를 청구하였다.

원고 다 🗘 🗘 피고

원고의 청구는, C가 원고 재직 중 담당한 업체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 고 있는 본건 정보를 이용한 영업의 금지 를 청구하는 내용으로서, 구체적으로 특정 되어 있다. 원고의 청구는 "본건 정보를 사용하여 영업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 로서, 특정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본건 정보는 비밀 관리성, 유용성 및 비공 지성을 충족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본건 정보는 비밀 관리성, 유용성 및 비 공지성을 충족하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 당하지 않는다.

C는 원고 재직 중 본건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피고 회사로 이전하였고, 피고는 위 정보를 사용하여 덤핑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고객 이탈, 가격 인하 압박 등에 의한 손해를 야기하고 있 다. C는 본건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위 정보를 사용하여 덤핑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고객 이탈 및 가격 인하 압박 등은 피고의 덤핑 등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04 판결 요지

"본건 정보를 사용하여 영업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고의 청구는 피고에게 본건 정보를 사용하여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명확하다.

일반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2조 4항 소정의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인정되려면 ① 해당 정보에 접속한 자에게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나 ② 해당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본건 정보의 내용 중 고객명에 대해서는 원고 회사 스스로가 공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지성은 잃게 되고, 그것 이외의 기본 관리료 등의 항목은 이것들을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편리하지만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이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유용성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영업비밀의 요건으로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려면 ①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② 암호 설정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접속을 특정인에게만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